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1. 16

다. 상 정 일 자 : 2000. 11. 16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나. 제정사유

-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도모 및 중개서비스업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과 하위법령이 개정됨.
- 개정된 법령에 의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제정키 위함.

다. 주요내용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안 제3조)
 - 과태료 부과된 10일이상 구술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부여
- 과태료 처분 통지등(안 제4조)
 - 위반행위 조사, 확인
 - 과태료 납부기한 :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독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 위법, 부당시 구제 :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을 확인시 즉시 취소됨.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 별첨

-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안 제6조)
 - 처분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관청에 이의신청
 - 법원통보 및 이의제기자에게 법원 통보사실을 즉시 통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2000. 1. 28공포), 동법 시행령(2000. 6. 7)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도모 및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부동산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 보장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며,
- 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조속히 공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지속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법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법 제39조 제2항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화순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